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7-16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 - 2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23누62351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A 주식회사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○○, 담당변호사 한○○, 이○○
피고, 피항소인	1. ○○특별시 ○○구청장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○○, 담당변호사 최○○
	2. ○○특별시 ○○구청장
	3. ○○특별시 ○○구청장
	4. ○○특별시 ○○구청장
	5. ○○특별시 ○○구청장
	6. ○○특별시 ○○구청장
	7. ○○특별시 ○○○구청장
	8. ○○시장
	9. ○○군수
	10. ○○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23. 9. 22. 선고 2022구합80497 판결
변 론 종 결	2024. 2. 16.
판 결 선 고	2024. 3. 22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7-16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10면 마지막 행부터 제11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.

『(이 사건 처분일 이후인 2021. 12. 31.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은 차량을 제조·조립하는 자가 그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취득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제20조 제3항 제2호를 신설하여 그 취득시기에 대해 '차량의 등록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취득일로 본다.'고 명확히 규정하였다).』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.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7-16

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○○

판사 이○○

판사 심○○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7-16

< 별지 1 >

처분 목록

연번	피고	경정청구세액 (단위, 원)	경정 청구일	경정청구 거부일	조세 심판 청구일	조세심판원 사건번호
1	○○특별시 ○○구청장	13,756,229,920	2020.11.25.	2021.1.14.	2021.4.14.	
2	○○특별시 ○○구청장	11,110,320	2020.12.2.	2021.1.14.	2021.4.14.	
3	○○특별시 ○○구청장	194,725,080	2020.11.25.	2020.12.30.	2021.4.2.	
4	○○특별시 ○○구청장	8,544,550	2020.11.30.	2021.1.21.	2021.4.21.	
5	○○특별시 ○○구청장	14,712,840	2020.12.1.	2021.1.21.	2021.4.21.	
6	○○특별시 ○○구청장	5,033,530	2020.11.27.	2021.1.21.	2021.4.21.	
7	○○특별시 ○○○구청장	5,449,280	2020.11.30.	2021.1.25.	2021.4.21.	
8	○○○도 ○○시장	50,356,000	2020.12.1.	2021.1.19.	2021.4.14.	
9	○○○도 ○○군수	53,875,800	2020.12.1	2020.12.9.	2021.3.11.	
10	○○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[1]	237,393,960	2020.12.7.	2021.2.2.	2021.4.30.	

끝.